

2019-05

정 책
연 구
보 고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연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지원 | 이난희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대리
배정숙 경기복지재단 주임

■ 연구진

연구 책임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연구 지원 이난희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대리
배정숙 경기복지재단 주임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9-05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연구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수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의 기회와 약간의 소득을 드리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2019년 경기도에서 7만여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8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에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일하는 어르신이 전국 노인인구의 30.6%(2,166명)에 해당했으나 2018년에는 31.3%(2,311명)으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의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역량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과도 맞닿아있다.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존 전달체계의 체계화를 위해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 왔으나,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 경기도 수행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근거,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 5개 영역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개발에 있어서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대표하는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지표개발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수행기관과 시·군 공무원 대상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가졌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각 수행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있는 수행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원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체계 개발 연구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현장전문가, 공무원분들과 모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진 식 범**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2019년 2월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존 전달체계 체계화를 위해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을 발표
 -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의 성과관리를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미 실시
 -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에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지원과 평가의 필요성 제시
-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체계 개발
 - 재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현장 적용가능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지자체의 의지, 지역사회 내 영향력,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 지표 설계
 - 본 보고서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말함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과 성과관리 동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달체계 중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운영 현황

- 경기도에 시니어클럽은 15시·군 16개소, 실버인력뱅크는 31개 시·군 3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 중

〈표1〉 경기도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비교

구분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경기도 자체 설치운영 계획 - 도 노인복지과-512('06.1.18호)
설치운영	15개 · 시군 16개소 (성남시 2개소 운영)	31개 시·군별 1개소씩 운영
근무인력	1개소 당 5명 이상 (기관장 상근)	1개소 당 2명(팀장과 직원)
기능역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 노인 인력 활용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 적합형 민간일자리 발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공익형 일자리 중심 추진
운영비	1개소 당 2억5천만원 (도 10%, 시군비 90%) 2018년 전국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평균액 2억 7천만원	1개소 당 67백만원 (도 30%, 시군비 70%)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동향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의 성과관리는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는 지역·업종·기관유형별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 목적 실시하고 있음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기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수행기관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 등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 개발
 - 정책적 목표와 현장상황을 고려한 지표개발

- 평가지표개발은 수행기관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향점 제시와 지자체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판단하도록 설계
 -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및 질적 향상
 -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권리보장 및 지자체의 협력과 활용 등
 -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를 활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1명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 실버인력뱅크협회,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와 자문회의의 추천으로 구성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5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다시 3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이 2개 영역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하는 방법을 취함

〈표2〉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내용

일자	회의명	회의내용
2019.07.30	제1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평가의 목적 공유, 평가영역별 담당팀 구성,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논의
2019.08.06.	제2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6개의 평가영역설정, D.성과영역은 보건복지부지표와 경기도 지표를 통합 수요처와 참여자의 만족도 지표 배치
2019.08.19.	제3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A.시설 및 평가, B.조직운영 및 재정, E. 참여자의 권리, F. 지역사회협력 영역의 팀 발표와 평가지표 수정 보완
2019.08.23.	제4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C. 인적자원관리, D성과 영역의 지표에 대한 팀 발표와 의견수렴
2019.09.06	제5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A~F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정범위 검토 및 전반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후 5개 영역으로 조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안)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각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과정 실시
- 평가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표3〉 경기도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평가지표(안)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지표수(개)	영역별 비중 (%)
A. 기관 운영	1. 시설의 적절성	3	5	16
	2. 조직운영	3		
	3.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수립 및 실천	3		
	4. 기관의 재정확보 노력	3		
	5. 회계의 투명성	4		
B. 인적 자원관리	1.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	3	6	18
	2. 직원의 교육 및 훈련	3		
	3. 직원의 근속기간	3		
	4. 직원의 복지	3		
	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 (정성평가)	3		
	6. 직원의 업무 숙련도 (정성평가)	3		
C. 성과	1. 시장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8	7	40
	2.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8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과	4		
	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력	5		
	5.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력	5		
	6. 수요처 만족도 (정성평가)	5		
	7. 참여자 만족도 (정성평가)	5		
D. 참여자의 권리	1. 참여자의 안전	4	4	15
	2. 참여자의 고충처리	4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4		
	4.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3		
E. 지역사회 협력	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5	3	11
	2. 지역사회자원 활용	3		
	3. 지역사회 참여	3		
총계		100	25	100

4.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 평가의 근거

- 시니어클럽의 평가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안)
- 실버인력뱅크의 평가근거
 - 2016.12. 사·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지침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안)

□ 평가방법

- 평가주체
 -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는 경기도가 수행하며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 중
- 평가운영
 - 평가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수행기관이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공무원과 학계·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역할 부여
- 평가주기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주기는 2021년 본 평가 시행 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고려하여 영역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 시행 고려
 - 기본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함

○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운영 보조금지원 대상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평가대상으로 함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기관 운영, 조직, 성과, 참여자 권리, 지역사회활동 등이 평가대상임
- 2020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자체평가로 실시되며 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2월임

□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인력의 충분한 훈련, 평가팀간의 격차 해소, 평가기관의 전문성 등이 요구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결과는 1차적으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으며, 2차적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수행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음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공·포상(금)제공, 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다음 평가까지),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우선 지급 등을 검토
 -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우수기관의 직원은 컨설턴트로 활동
 - 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단 결과 활용 방안을 참고하여 사업량 조정 또는 사업참여 심사 시 고려
 - 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화, 직원의 안정된 고용유지와 지자체의 협력 유도 등에 활용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시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컨설팅
 - 평가실시의 목적이 수행기관의 역량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평가실시에 앞서 충분한 사전 교육 필요
 - 수행기관 평가 이후에 평가결과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인력풀 마련

- 시행 20년이 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위원의 인력풀이 있음에도 평가단에 대한 불만과 평가단 간 역량 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인력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목적, 조직구성과 인력, 운영사업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교육 필요

○ 수행기관 평가 관련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시기, 평가주기, 평가대상, 평가수행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재원 등이 기술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
 - 평가시기 : 자체평가와 동일한 매년 5~6월로 예정하고 자체평가 이후 확정
 - 평가주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하되 성과영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평가대상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 평가수행기관 : 경기도가 주체이나 평가전문기관에 대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시행 중
 - 평가위원회 구성 : 2인 1조 구성 또는 3인 1조 구성
 - 평가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 대행사업 등으로 마련

키워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평가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5
II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과 현황	7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9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16
	3.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28
III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33
	1.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성	35
	2. 평가지표 개발 목적	37
	3. 평가지표 개발 과정	38
	4. 평가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47
IV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55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7
	2. 평가근거	58
	3. 평가방법	59
	4. 평가결과 활용방안	63
	5.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65
	참고문헌	69
	부록	71

Ⅰ 표 차례 Ⅰ

〈표 Ⅱ-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내용	10
〈표 Ⅱ-2〉 공익활동 세부사업 내용	11
〈표 Ⅱ-3〉 사회서비스형 세부사업 내용	12
〈표 Ⅱ-4〉 시장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12
〈표 Ⅱ-5〉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내용	13
〈표 Ⅱ-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9년)	16
〈표 Ⅱ-7〉 2018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20
〈표 Ⅱ-8〉 경기도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현황	23
〈표 Ⅱ-9〉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 및 법인 현황	27
〈표 Ⅱ-10〉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비교표	28
〈표 Ⅱ-11〉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관리 변경 사항	29
〈표 Ⅱ-12〉 공익활동 성과지표 구성 및 배점	30
〈표 Ⅱ-13〉 2019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구성 및 배점	31
〈표 Ⅱ-14〉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결과그룹별 점수	31
〈표 Ⅲ-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기관 평가영역 및 배점	39
〈표 Ⅲ-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영역 및 배점	40
〈표 Ⅲ-3〉 2019년 보건복지부 공익활동 성과지표 및 배점	41
〈표 Ⅲ-4〉 2019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및 배점	42
〈표 Ⅲ-5〉 유사평가지표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평가지표 비교	43
〈표 Ⅲ-6〉 경기도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44
〈표 Ⅲ-7〉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내용	47
〈표 Ⅲ-8〉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48
〈표 Ⅲ-9〉 평가영역 별 평가내용	49
〈표 Ⅲ-10〉 A. 기관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51
〈표 Ⅲ-11〉 B. 영역의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52
〈표 Ⅲ-12〉 C. 성과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53
〈표 Ⅲ-13〉 D. 참여자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54
〈표 Ⅲ-14〉 E. 지역사회 협력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54
〈표 Ⅳ-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등급	61
〈표 Ⅳ-2〉 평가결과 활용의 예	63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Ⅱ-1〉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도 1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2019년 2월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존 전달체계 체계화를 위해 「경기도 노인일자리¹⁾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을 발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의 추진방향은 비영리기관(단체) 참여유도와 부대경비 추가지원 등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일자리전담기관 역할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활성화 추진,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구축임
 - 특히 일자리 전담기관 역할 강화의 방법으로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와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의 평가 도입을 제시함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31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있으나 중앙정부나 시·도 단위에서 평가 미실시
 - 2005년 이후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 실적·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나 미실시
 - 실버인력뱅크는 보조금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나 미실시

1)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표기하나 본 보고서는 수행기관에 초점이 맞춰있어서 노인일자리로 표기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시·군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 재정립된 후 자원봉사와 노인 일자리사업을 병행했으나, 2016년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지침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을 주요기능으로 기능 전환됨

□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의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미 실시

-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는 수행기관의 사업목표 달성 외 적절한 사업운영 등 현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질 관리 지표 중심으로 개편
 - 성과지표 구성과 배점은 사업운영(60점), 사업성과(30점), 가점(10점)으로 되어있음
- 2018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은 지역, 업종, 기관유형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됨
 - 성과지표는 각 시장형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운영(사업단수, 배정 인원 등), 참여자(달성률, 참여개월 수), 수익, 보수 등으로 구성됨
-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수행기관이 다양화되고 설치가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 등의 사업 평가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방향성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본 보고서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말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지자체, 새마을회 등 다양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의 대상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한함

□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체계 개발
 - 재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평가주체, 운영방법, 평가주기, 활용방안 등)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현장 적용가능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지자체의 의지, 지역사회 내 영향력,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 지표 설계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 선행연구 검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관련 행정자료 검토
- 자문회의
 - 경기도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유사평가지표 분석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익활동, 시장형일자리의 성과진단 지표 분석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분석
 - 지방이양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분석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학계 2인, 현장 5인, 공무원 2인, 재단 2인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5회 운영 및 설명회 개최

□ 연구 흐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자문회의

- 일 시 : 2019.06.26.(1차자문회의), 07.09(2차 자문회의),
08.30(3차 자문회의),09.06(4차 자문회의) 09.27(5차 자문회의)
- 대 상 : 학계전문가,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연구진
- 내 용 :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수행기관의 현황논의 및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

- 기 간 : 2019.07.30. ~ 09.06.(1차 ~5차)
-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5인), 경기도청(2인),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2인), 재단(3인)
- 내 용 : 유사평가지표 분석 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검토 의견수렴

1.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 기간 2019.09.02.~ 09.07
 - 방 법 : 서면 의견 수렴
 - 내 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의견수렴
 - 기간 2019.09.11.~ 09.17
 - 방 법 : 서면 의견 수렴.
 - 내 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설명회

- 일 시 : 2019.09.23.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내 용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및 평가체계 개발

II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3.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II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 노인일자리사업 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함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8. 1.개정)

- 목적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구성 제2조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5조~제8조 센터 설치와 운영 등, 제9조 ~제12조 경기도의 역할, 제13조 시행규칙 제정으로 구성
 - 특히 제12조(행정·재정지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내용·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노인사회활동과 노인일자리로 분류되며, 노인 사회활동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으로, 노인일자리는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으로 분류

〈표 II-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내용

구분		유형	사업내용	예산지원	참여노인 지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구분	유형	사업내용	예산지원	참여노인 지위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주 : 음영 처리된 활동 및 사업이 본 연구의 대상임
 출처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사회활동의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음

〈표 II-2〉 공익활동 세부사업 내용

유형	세부사업 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사회활동의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유도를

-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표 II-3〉 사회서비스형 세부사업 내용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아동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지원 등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시설지원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 관련시설 등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장애인특수학교	이용대상자 보조 및 급식지원 등
취약가정시설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노인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이용 노인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경로당제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예방 지원, 캠페인 및 각종 서비스 지원 등
기타시설지원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출처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노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사업소득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로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이 있음

〈표 II-4〉 시장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분	유형	세부사업 내용
공동작업장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구분	유형	세부사업 내용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기타제조 및 판매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
서비스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아파트 택배사업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화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 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협력사업	지역내 소상공인 업무지원
	기타 서비스제공형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의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는 사업
 - 직종분류는 관리사무 종사자, 공공/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수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등이 있음

〈표 Ⅱ-5〉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내용

중분류	소분류	세부사업 내용
관리사무종사자	경영, 영업, 판매 및 운송관련 관리자	행정 및 경영, 회계,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기타 고객 서비스 관리자
	기타 사무직	상담, 여행·안내, 통계관련 사무원, 고객상담 및 기타 사무원,
공공/전문직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강사, 보조교사, 보육교사
	기타 전문직	시험감독관, 리서치, 설문, 번역, 문화방송, 출판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예식 및 보건·의료 서비스	예식, 혼례 및 장례종사자, 산후조리, 요양, 간병 등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종사자
	운송 및 여가 서비스	택시, 버스, 기타 자동차운전원, 운송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서비스	패스트푸드원, 주방·식당보조원, 음식배달원 등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우편물집배원, 기타 배달원

중분류	소분류	세부사업 내용
판매종사자	계산원 및 대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대표원, 복권 판매원
	판매원 및 판매단순 종사자	주유원, 상점 판매원, 상품대여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작물재배종사자	곡식, 채소 및 특용작물, 과수, 원예작물 재배업, 조경원, 조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양식원 및 기타 관련 종사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정육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기타 기능 관련직	검유·의복, 가족 관련 기능직, 목재·기구·악기, 금속성형,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배관공 등
생산·제조 단순 노무직	생산/ 제조	식료품제조, 곡물가공품 제조, 떡, 빵 및 과자류 제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 탁주 및 발효주 제조업 등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재활용품수거원, 세차, 세탁, 검침, 골프장 도우미, 학교병원 급식도우미, 농어촌 일손도우미, 기타 단순종사원
	기타	육류, 수산물 가공 및 저장, 과실 및 채소가공, 소분

출처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의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시키는 사업
 - 노인일자리의 고령자친화기업은 최소 3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설립 지원
 - 노인일자리의 기업연계형은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 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라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은 봉사, 노인일자리는 근로로 분류
- 공익활동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참여기간은 12개월과 9개월이 있으며, 참여노인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활동 가능
 - 사회서비스형의 참여자격은 공익활동과 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원칙
 - 운영기간은 최소 10개월, 근무시간은 월 최소 60~66시간 범위임
 -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사업 참여자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임
 - 운영기간은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제공형 사업은 9개월 이상 자율적 운영
 - 참여노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르며, 1일 최대 8시간임

□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예산지원 기준은 <표 Ⅱ-5>와 같으며 국·도·시군비의 백분율은 50 : 7.5 : 42.5임
- 공익활동의 활동비는 2019년 현재 1인당 월 27만원이 지원되며 수행기관에게는 참여기간이 9개월인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연간 14만원, 노노케어(전국형)와 같이 12개월 사업은 16만원이 부대경비로 지원
 - 활동비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2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22만원, 2018년 27만원, 2022년 40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임
- 사회서비스형은 시간당 9천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 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48.9만원임
- 시장형의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 참여노인의 임금은 사업의 수익 또는 파견업체에서 지급하며 정부는 수행기관에게 부대경비로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노인 1인당 210만원, 인력파견형사업단은 15만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이 참여노인 153명당 1명, 인력파견형이 참여노인 100명 당 1명으로, 12개월 근무, 월 1,574천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근무기간이 12개월로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반영되어 개선됨
 - 시·도 전담인력은 시·도당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12개월, 월 1,860천원으로 운영

〈표 II-6〉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9년)

유형		참여노인 1인 예산지원 기준			국도시비 보조백분율	
		임금(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계
공익활동		27만원	9개월	14만원	257만원	50 : 7.5 : 42.5
		27만원	12개월	16만원	340만원	
사회서비스형		54만원(권장) ~59.4만원	11개월(권장) ~10개월	48.9만원	788.7만원	
시장형 사업단	공동 작업형	-	연중	210만원	210만원	
	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연중	15만원	15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746천원	12개월	-	2,269,8만원***	

* 부대경비: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사업비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연 1,458천원 포함
 ***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반영
 출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

-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 등의 공공전달체계와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포함된 수행기관으로 구성, 공공전달체계는 정책결정,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조정·심사·행재정 지원 등의 역할
 -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역할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결정,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사업지원과 대국민 홍보에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사업 홍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개최, 전담인력 교육 및 모니터링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이며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음

- 시·군은 각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관리·감독, 재정·행정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개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실제적 역할 수행

□ 노인인력개발기관²⁾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있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을 지원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등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보급 및 심사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 현장점검, 공익활동 평가,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성과진단, 수요조사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계자 교육·훈련
 - 노인인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 참여자 D/B 및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민간분야 기반조성(취·창업활동) 사업 추진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예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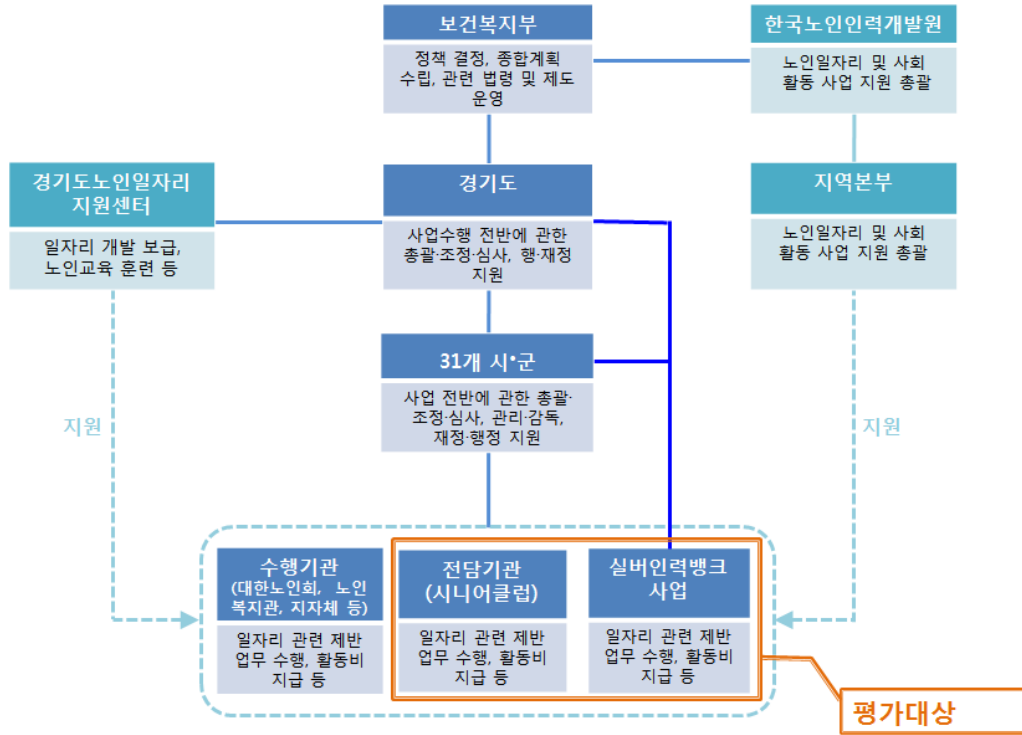
-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2.7.) 제5조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 노인반려동물돌봄, 체험사업단, 세차사업단 등 경기도의 특성화된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민간기업 노인취업 연계 등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단의 노후시설개선, 제품개발 및 개선 지원, 운영자문, 센터 성과분석 및 중장기 비전설정 등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활성화 지원
 - 노인생산물 및 노인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교육 훈련,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자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민간취업지원 서비스 정보망 구축, 노인일자리 정책연구 및 포럼 등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등이 있으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³⁾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활동비 지급, 활동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 시스템(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참여자 정보, 활동비 내역 등 각종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관련 정보 입력·관리, 사업실적 추진실적 보고 등

3)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 위탁사무이나 경기도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2016.12.)」에 근거하여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표기

〈그림 II-1〉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도



자료 : 황경란(2018)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수정

□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⁴⁾

- 2018년 현재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16개소, 대한노인회 37개소,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실버인력뱅크 31개소, 노인복지관 4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3개소, 지자체 16개소, 기타 1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 13개, 성남시 12개, 용인시 12개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1개소가 있음

4) 경기도 자료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상 수행기관 개소수에 차이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을 기준으로 시니어클럽16개, 실버인력뱅크 31개, 노인복지관 등의 전체 개소수를 기재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을 근거로 함

〈표 II-7〉 2018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구분	총계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실버 인력뱅크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지자체	기타
경기도	166	16	37	31	41	13	16	12
수원시	13	1	4	1	5	2		
성남시	12	2		1	6	1	1	1
용인시	12	1	3	1	2(1)	1	3	1
부천시	9	1(1)	3	1	3	1		
안산시	7	1	2	1	3			
안양시	7	1(1)	2	1	1		2	
화성시	6	1	1	1	3			
평택시	7		1	1	4		1	
시흥시	4	1	1	1	1			
김포시	5	1	1	1	1(1)		1	
광명시	6		1	1	(1)	3	1	
광주시	3		1	1	(1)		1	
군포시	5	1(1)	1	1	2			
오산시	3		1	1	(1)			1
이천시	3		1	1	(1)			1
안성시	4		1	1	(1)			2
의왕시	4	1	1	1	1(1)			
하남시	3		1	1		1		
여주시	4		1	1	(1)		1	1
양평군	5			1	(1)	1	1	2
과천시	1			1	(1)			
고양시	9	1	3	1	3	1		
남양주시	6	1	1	1	3			
의정부시	7	1	1	1	3(1)			1
파주시	5		1	1	(1)	1	1	1
양주시	2		1	1				
구리시	4	1		1		1	1	
포천시	4		1	1	(1)		1	1
동두천시	1			1	(1)			
가평군	2		1	1	(1)			
연천군	3		1	1	(1)		1	

자료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8)를 기초로 하여 분류

주1 : 노인복지관의 괄호는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실버인력뱅크로 기록한 곳임

주2 :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중 노인복지관과 실버인력뱅크를 모두 표기한 곳도 있음

주3 : 시니어클럽 중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곳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모두 표기함

□ 시니어클럽

○ 현황

- 경기도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수행기관으로 2013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법제화된 이후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 높은 추진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15개 시·군에 16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 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이중 3개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시니어클럽은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2개 시니어클럽은 동일법인에 실버인력뱅크가 있음

○ 목적 및 정의

- 목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정의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13.12.5.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제 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행정·재정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재정지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중점 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사업단)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 시니어클럽 시설 및 인력 기준(2013.12.5.시행)

- 시설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 1실 이상
 -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1개 이상
 - 시설의 규모 :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 인력 기준
 - 인력배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산편성 및 집행

-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 시니어클럽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름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등)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 인사 및 보수 관리

- 직제 및 보수 규정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노인복지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 사업 운영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 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 종결 시에는 관장 및 직원 대표, 참여노인 대표, 노인일자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

〈표 Ⅱ-8〉 경기도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현황

시군명	운영법인	비고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성남시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사회복지법인기아대책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부천시	재단법인 부천 YMCA	실버인력뱅크
안산시	사)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안양시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 복지재단	실버인력뱅크
평택시	-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김포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광명시	-	
광주시	-	
군포시	사단법인 성민원	실버인력뱅크
오산시	-	
이천시	-	
안성시	-	
의왕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시군명	운영법인	비고
하남시	-	
여주시	-	
양평군	-	
과천시	-	
고양시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	동일법인 운영 실버인력뱅크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일법인 운영 실버인력뱅크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파주시	-	
양주시	-	
구리시	사단법인 구리시문화원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2018)
경기도에서 시니어클럽을 확대 설치하고 있어 2018년 자료 활용

□ 실버인력뱅크

○ 현황

-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활동의 비율이 높으며 시장형 사업단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2016년 12월 지침에 따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시설이 아닌 위탁사무로 운영기관 유형은 노인복지관이 20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 시니어클럽이 3개소, 대한 노인회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지자체 1개소, 봉사회 등 3개소임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인력관리를 위해 전환되었으며 당시 2명의 인력과 예산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 현재 2명 인력과 6,73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실버인력뱅크는 대부분 운영기관의 팀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관의 인력이 순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운영기관 내 인력이 순환되지 않는 경우는 동결된 운영비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환되는 경우도 낮은 인건비로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음

○ 목적

- 인생 100세 시대 일할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인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2016.12.))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행정·재정지원)
- 경기도 노인복지과-512('06.1.18.)호 「실버인력뱅크 운영계획」
- 경기도사회적 일자리과(2016.12)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사업역량 강화(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 사업 실무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수행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31개 시·군별 1개소
- 소요예산 : 2,086,3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보조율 조정(2016) : 10% → 30%
- 지원기준 : 개소당 67,300천원
 - ※ (인건비 등 지원) 시군 또는 수행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인력 : 2명(팀장1, 직원1)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추진(경기도형 노인일자리전담 기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중심 추진
 - 민간취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 세부운영방안

-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사업 중심) 추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 노인인력 정보 DB구축 및 노인인력 활용 방안 강구
- 노인 사회활동 방향제시 및 참여유도
- 노인 취업상담 및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 운영방법

- 사회복지시설 조직 내 설치 운영 원칙
 -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부설
 - ※ 단, 부득이한 경우 시·군 실정에 따라 노인복지관계기관 등에 설치 가능
- ❖ 실버인력뱅크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경력 인정 등 곤란
 - ❖ 운영주체 변경 시 기존 인력 승계 조치
- ✓ 「실버인력뱅크」의 예산편성은 운영주체 기관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의 지도·감독 철저
 - ✓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준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의 제반자원 활용
- 전담직원 인사 관리 및 급여기준 정비
 - ✓ 시·군 실버인력뱅크별 전담직원 2명 배치(팀장1, 직원1)
 - ✓ 직원(2명)은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업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2급(팀장은 반드시 1급) 이상인 자를 배치
 - ✓ 운영주체 소속 직원으로 임용하되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업무만 전담(※ 운영주체의 고유업무 병행 금지)
 - ✓ 직원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되, 운영주체의 보수 체계에 따라 적의 조정·지급
 - ※ 예산 범위 내 지급, 시군비 및 자부담으로 추가지급 가능
 - ✓ 실버인력뱅크 업무수행(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참석
 - ✓ 노인일자리 유공 기관(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표 Ⅱ-9〉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 및 법인 현황

시군명	운영기관	운영법인	비고
수원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용인시	용인시치어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시니어클럽
부천시	부천시시니어클럽	재단법인 부천 YMCA	
안산시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지회	사)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안양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화성시	화성시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 복지재단	
평택시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시흥시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포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시니어클럽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광주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학교법인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군포시	군포시시니어클럽	사단법인 성민원	
오산시	오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이천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안성시	안성시노인복지관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의왕시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사회복지법인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여주시	여주시노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양평군	양평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고양시	고양시새마을회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	
남양주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의정부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시니어클럽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양주시	양주시청	양주시	
구리시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지회	
포천시	포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동두천시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좋은손복지재단	
가평군	가평군노인복지관	가평군복지재단	
연천군	연천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2018)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비교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대상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 근무인력,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있음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점추진하도록 역할부여⁵⁾
 -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형일자리사업단을 운영하는 실버인력뱅크도 있음
 -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에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운영과 운영비지원에 열악한 상황
 - 수행기관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적에 차이 존재

〈표 II-10〉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비교표

구분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경기도 자체 설치운영 계획 - 도 노인복지과-512('06.1.18호)
설치운영	15개·시군 16개소 (성남시 2개소 운영)	31개 시·군별 1개소씩 운영
근무인력	1개소 당 5명 이상 (기관장 상근)	1개소 당 2명(팀장과 직원)
기능역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사업 수행 지역 노인 인력 활용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 적합형 민간일자리 발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공익형 일자리 중심 추진
운영비	1개소 당 2억5천만원 (도 10%, 시군비 90%) 2018년 전국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평균액 2억 7천만원	1개소 당 67백만원 (도 30%, 시·군비 70%)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3.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를 시행 중이며 공익활동의 성과관리는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구성

5)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안내

- 기존의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한 2019년 공익활동의 성과관리 추진방향은 관리체계의 이원화, 성과관리 목표의 명확화, 전산화, 관리체계 마련에 있음⁶⁾
 - 관리체계 이원화를 위해 지자체는 행안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수행기관의 사업목표 달성 외 적절한 사업운영 등 현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질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관리 목표 명확화 도모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상 전산지표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기간단축 및 수행기관 부담 경감 노력, 기존에 4단계에서 1단계로 개선
 - 공익활동 성과관리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등 관리체계 마련
 - 수행기관에서 사업 진행 중 성과관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구축 검토
 - 성과관리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강화 및 부진기관 컨설팅 확대 등

〈표 Ⅱ-11〉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관리 변경 사항

구분		기존(~2018)	변경(2019)
평가체계		자체평가, 확인평가, 교차평가, 중앙현장평가	수행기관 전산실적 근거로 성과관리
평가지표		자체평가지표, 전산평가지표, 이원화	전산지표 단일화
우수기관 선발	수행기관	평가결과 고득점 수행기관 선정	좌동
	지자체	관할 수행기관의 평가점수(평균)활용, 고득점 지자체 선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합동평가(별도 평가)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계획(안)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수행기관의 성과를 성과관리 대상으로 하며 평가 시기는 2020년 3월로 예정
 - 지자체의 자체사업 포함
 - 지자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수행기관 자격으로 성과관리 시행
 - 운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
- 수행기관은 사업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성과점수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후 최종 성과점수를 공개, 우수기관 선정

6) 보건복지부(2019) 공익활동 성과관리 추진계획

- 평가항목은 사업운영, 사업성과, 가점이며 성과지표 구성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수행기관(100점)= 사업운영(60점)+사업성과(30점)+가점(10점)

〈표 II-12〉 공익활동 성과지표 구성 및 배점

구분	관리지표항목	산출방식
사업운영(60점)	1. 참여자 선발(10점)	전산
	2.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10점)	
	3. 활동 내실화 노력(30점)	
	4. 담당자 전문성(10점)	
사업성과(30점)	5. 사업성과(30점)	
가점(10점)	6. 가점(10점)	
점수 합계		100점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계획(안)

□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는 지역·업종·기관유형별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

-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의 방향성은 사업단과 기관평가 분리, 유형변경 반영, 성과관리 절차의 간소화, 정부정책방향 반영, 환류체계 마련임⁷⁾
 - 우수사업단과 우수기관을 분리하여 평가대상 명확화하고, 2019년 사업유형변경에 따른 지표의 적합성 문제를 개선함
 - 관리지표를 줄이고 수요자인 참여노인의 근로조건 향상과 부정수급 조치, 안전교육 강화, 조기집행 등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한 성과관리 추진
 - 성과가 사업운영 전반에 긍정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보급 성장 지원
- 2019년 평가대상은 차세대시스템 입력실적 기준 시장형 사업단 전체이며, 2020년 1~2월 평가 예정
- 평가항목은 사업성과(참여자, 수익, 보수), 정책방향 준수이며 성과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사업단(50점)= 사업성과(40점)+가점(10점)

7)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 추진 계획

- 지자체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합동평가로 별도 진행

〈표 Ⅱ-13〉 2019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구성 및 배점

영역	지표	산출방식
성과(40점)	참여자(15점)	전산
	수익(10점)	
	보수(15점)	
정책방향 준수(10점)	가점(10점)	
점수 합계		50점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 계획

- 성과진단 그룹별 점수

〈표 Ⅱ-14〉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결과그룹별 점수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성과진단 그룹별 점수	38점 이상	32~38점미만	26~32점 미만	20~26점미만	20점 미만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 계획

- 성과관리 결과는 우수 사업단 인센티브, 포상 등 제공, 부진사업단에 대한 관리·지원, 부분별 우수 운영 능력 보유 사업단 발굴, 우수 수행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계획 등 수립예정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평가할 계획이 있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수행기관 평가가 보건복지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규모와 법적 근거, 기관과 위탁사업의 차이 등이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한 평가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가 다양한 주체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 방향성
2. 평가지표 개발 목적
3. 평가지표 개발 과정
4. 평가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성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는 법적 근거, 조직 규모와 주요사업에 차이가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관점에서 하나의 지표로 평가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상근 기관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으로,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임
 - 전국 평균 2억 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경기도 시니어클럽은 2억 5천만원~2억 7천만원을 지원받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형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관에서는 시장형일자리사업과 공익활동을 수행 중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경기도 지침을 근거로 노인복지관 등에 수탁, 노인의 사회참여를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2016년 이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정책에 따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기관화됨
 -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기관화되어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행
 - 실버인력뱅크는 팀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경기도와 시·군·비로 6,73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기관장, 팀장,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작적 정의함

- 공익활동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실버인력뱅크도 있음
- 시니어클럽은 기관으로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실버인력뱅크는 사업이며 공익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되는 평가지표의 대상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지표로 개발
 - 경기도 16개 시니어클럽은 규모와 주요 사업이 다르며 공익활동을 하는 기관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음
 - 공익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는 실버인력뱅크 중에는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있는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띠고 있음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평가하되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 조직의 미션 비전체계 수립 등 기관의 규모와 조직 등 시니어클럽과 기본적 차이를 고려하고자 함
 - 기관에서 실버인력뱅크의 위치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고자 시니어클럽과 같은 조직관리지표와 미션·비전지표를 적용함
 - 실버인력뱅크를 기관화하여 평가함으로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성과는 직접성과와 간접성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계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 수행을 직접적 성과로 보고 참여자의 권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된 간접성과로 하여 평가지표 개발
 - 보건복지부의 운영안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공익활동은 참여노인 수로 평가하였으며 시장형일자리를 성과관리결과의 그룹별 사업단으로 평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성과로 참여노인의 권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참여자 권리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평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투입평가지표로 개발함
 - 수행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고자 성과지표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성과지표 결과를 반영함

2. 평가지표 개발 목적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기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을 분석,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수행기관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 등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 개발
 - 정책적 목표와 현장상황을 고려한 지표개발

- 평가지표개발의 방향성
 - 평가지표 개발은 ①현재보다 높은 지향점을 기준으로 하고 각 시설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과 ②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이 있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각 수행기관이 노인복지향상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및 질적 향상
 -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권리보장 및 지자체의 협력과 활용 등
 - 또한, 지자체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함
 - 수행기관과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를 활용
 - 정량평가지표는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 정성평가지표는 정책의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을 위해 개발
 -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미래지향적 지표를 배치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역할 부여

3. 평가지표 개발 과정

- 기존의 유사평가지표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구성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영역의 대표적인 기관평가지표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표를 분석, 사업평가지표로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영역을 기초로 평가영역을 개발
 - 소규모 시설이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정성평가지표 등 개발
 - 성과영역의 성과측정은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결과를 활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높은 비중으로 배점되어있음
 - 6개 유형은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구성
 - A. 영역은 사회복지시설 전체 공통지표의 비중이 높으며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영역으로 고정된 시설이므로 평가주기마다 평가하는 실효성이 없어 시설에 대한 인증제 등 대체방안이 논의 중
 - C. 인적자원관리는 종사자의 처우와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구성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가장 배점이 높으며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구분됨
 - E. 이용자의 권리는 노인을 수혜자가 아닌 이용자로 보는 인권강화 측면이 있음
 - F. 지역사회 관계는 노인복지관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임
 - 2018년 경기도 노인복지관 지표에서는 복지관의 규모를 고려한 차등 배점을 도입
 -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영역과 배점임

〈표 Ⅲ-1〉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의 기관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지표수
A. 시설 및 환경		5	8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8
C. 인적자원관리		20	1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8	37
	D1. 프로그램 기본지표		3
	D2. 프로그램 공통지표		4
	D3. 평생교육지원사업		2
	D4. 정서생활지원사업_상담사업		2
	D5. 사회참여지원사업_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3
	D6. 건강생활지원사업-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2
	D7. 위기 및 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사례관리		1
	D8. 프로그램 선택사업		4
	D9. 프로그램 선택사업		4
	D10. 프로그램 선택사업		4
	D11. 프로그램 선택사업		4
D12. 프로그램 선택사업	4		
E. 이용자의 권리		5	4
F. 지역사회관계		12	4
총계		100	71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 지방이양사업인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관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와 유사한 6개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직이 시설장 1명을 포함한 5명, 보조금이 2억인 것을 고려 평가지표가 간소화되어있음
- A. 시설운영 및 인력관리, B. 사업운영 및 후원관리, C. 대상자 및 서비스관리, D. 지역사회자원활용, E. 면담지표, F. 이용자 만족도로 구성, 높은 비중을 차지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복지관 보다 소규모이며 방문돌봄서비스를 주로 실시하고 있음

〈표 Ⅲ-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100	100
A. 시설운영 및 인력관리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2	15
	2. 인적자원 관리	3	
	3. 시설장의 경력사항	4	
	4. 직원교육 및 훈련	3	
	5. 직원복지	3	
B. 사업운영 및 후원관리	1. 사업비 비율	4	16
	2.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3	
	3. 후원금(품) 비율	4	
	4. 회계관리 투명성	2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C. 대상자 및 서비스관리	1. 서비스 이용자 선정	5	44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4	
	3.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 사정 실시	5	
	4. 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	
	5. 서비스 과정의 적절성	5	
	6.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7. 서비스 제공 표준매뉴얼	3	
	8. 이용자별 개별서비스 관리	2	
	9. 이용자 권익보호	5	
	10. 치매대응전략	2	
	11. 서비스 기간 종료 및 신규 이용자 발굴	3	
D. 지역사회자원 활용	1. 지역연계자원 활용	4	12
	2. 자원봉사자관리	4	
	3. 공모사업	4	
E. 면담 지표	1. 센터장의 기관운영 전문성	3	9
	2. 사회복지사 업무숙련도	3	
	3. 서비스 제공 적합성	3	
F. 이용자 만족도	1.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	4

김정희(2018) 2018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성과관리지표가 있음
 - 공익활동 성과관리지표는 사업운영영역(60점)과 성과관리영역(30점), 가산점 1-점)으로 구분됨

- 공익활동 성과관리지표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활동 내실화 노력(30점)’
으로 공익활동의 목적이 노인의 사회참여이기 때문으로 보임

〈표 Ⅲ-3〉 2019년 보건복지부 공익활동 성과지표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계			100
사업운영 (60점)	1. 참여자 선발(10점)	1-1. 사업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운영	5
		1-2. 후순위자 참여 및 소득점자 미참여 사유 입력	5
	2.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10점)	2-1. 자격변동 및 부정수급 확인·조치	5
		2-2. 자격변동 및 부적격·부정수급 적절 조치	5
	3. 활동 내실화 노력(30점)	3-1. 참여자 활동 교육	5
		3-2. 참여자 안전교육	5
		3-3. 실적마감 적기성	3
		3-4. 사업성과보고서 등록	3
		3-5-1.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3
		3-5-2.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	3
		3-5-3. 수요처 대상 만족도 조사	3
		3-5-4. 수요처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	3
	3-6. 참여자 상해보험가입	2	
	4. 담당자 전문성(10점)	4-1. 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교육 참여정도	5
4-2.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이수		5	
사업성과 (30점)	5. 사업성과(30점)	5-1. 예산집행실적	10
		5-2. 사업추진실적	12
		5-3. 사업추진율	8
가점(10점)	6. 가점(10점)	6-1. 추경사업 추진	3
		6-2. 조기집행실적	5
		6-3. 사회서비스형사업 추진	2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성과관리지표는 50점 배점으로 성과가 40점에 해당
 -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지표 성과영역 중 참여자 관련 지표가 15점, 수익이 10점, 보수가 15점이며 정책방향 준수 여부 배점은 10점으로 설정

〈표 Ⅲ-4〉 2019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및 배점

영역	지표		배점
계			50
성과(40점)	참여자	총참여자 달성률	5
		1인당 참여개월 수	10
	수익	(배정인원) 1인당 연매출	3
		예산(보조금)대비 수익비율	7
	보수	(참여자)1인당 월평균 보수	10
		보수 내 비보조금 비율	5
정책방향 준수(가점,10점)	참여자 관리(안전교육)		2
	참여자관리(부정수급조치)		3
	조기집행 준수여부		3
	마감일자 준수여부		2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성과관리 추진계획)

□ 유사 평가지표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지표 비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 평가지표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의 평가지표,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평가지표,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평가지표, 시장형일자리 성과지표를 분석
 - 평가영역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6개 영역을 기초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5개 영역으로 통합
 -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정량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기관장과 종사자의 전문성, 성과지표로 수요처와 참여자의 만족도 지표를 개발
 - 5개 영역 중 성과영역은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게 함으로 수행기관에게 평가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

〈표 Ⅲ-5〉 유사평가지표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평가지표 비교

	기존의 유사평가지표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평가영역	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노인복지관)6개 영역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관계	- 5개 영역으로 구성 · A. 기관운영, B. 인적자원관리, C. 성과 D. 참여자의 권리, E. 지역사회협력 - 성과영역의 추진성과 부분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결과 반영
	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6개 영역 A. 시설 및 인력관리, B. 사업운영 및 후원관리, C. 대상자 및 서비스관리, D. 지역사회자원활용, E. 면담지표, F. 이용자 만족도	
	3.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지표 3개 영역 사업운영(참여자선발,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활동 내실화 노력, 담당자 전문성), 사업성과, 가점	
	4.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2개 영역 성과(참여자수, 수익, 보수), 정책방향 준수	
지표 수	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노인복지관) : 71개 (2015년)	25개
	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2018년)	
	3.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지표 21개 (2019년)	
	4.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10개(2019년)	
평가지표 종류	1.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노인복지관) : 정량지표	- 정량지표(21개)+정성지표(4개) · 정성지표 : 기관장의 전문성, 직원의 숙련도, 수요처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량지표+정성지표(면담지표)	
	3.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성과지표 : 정량지표	
	4.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성과지표 : 정량지표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의 목적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대상이 되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표 개발 도모

○ 구 성

- 구성 방식 :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 실버인력뱅크협회,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와 자문회의의 추천

- 구성 인원 : 12명

- 경기도 주무부서 공무원(당연직),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당연직), 시니어클럽 대표 2명, 실버인력뱅크 대표 3명, 학계 전문가 2명, 연구책임

〈표 Ⅲ-6〉 경기도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구분	분야	소속	직급	비고
평가 지표 개발 위원	학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장
		한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장	수원시 실버인력뱅크	팀장	
		고양시 시니어클럽	과장	
		시흥시 실버인력뱅크	부장	
		수원시 시니어클럽	실장	
		포천시 실버인력뱅크	팀장	
	공무원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	당연직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주무관	당연직
	지원기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팀장	당연직
지원	재단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	연구위원	간사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대리	
		정책연구실 전략연구팀	주임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	연구원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과정

- 5차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회를 다시 3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이 2개 영역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하는 방법을 취함
- 제1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6개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6개 영역에서 평가할 내용은 무엇인가, 정량평가와 정성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어떤 것이 적절한가,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 실버인력뱅크는 사업으로 기관평가가 적절하지 않으나, 경기도 지침과 조례에 따라 수행기관화되어 있어 기관장과 팀장,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하나의 기관으로 조작적 정의함

- 시니어클럽과 동일한 평가지표로 실버인력뱅크를 평가한 결과에 근거해 향후 실버인력뱅크의 운영방향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수렴
 - 사회복지시설의 A, 시설 및 환경영역의 지표는 복지관에 적합하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는 시설이 주 이용공간이 아니므로 최소화하였으며 시설보다 제공인력의 역량과 이용자 권리에 초점을 둬 또한 지자체와의 관계를 강조
 - 성과평가 시 대부분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개발하였으며 수행기관의 부담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
 - 평가결과 활용으로는 지자체의 협력 증진, 수행기관 인센티브 등 제언
 - 평가지표개발위원을 3인 1조로 구성된 3개팀으로 나누어 2개 영역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논의 후 수정·보완하는 개발 방식
- 제2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각 팀에서 제안한 영역 별 지표수와 배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체 평가지표의 틀을 확정
- A, 시설 및 환경 영역은 7점 배점에 2개 지표 A1, 시설의 적절성(3점), A2, 시설의 안전성(4점)을 설정
 - B, 조직운영 및 재정 영역은 13점 배점, 4개지표 B1, 조직관리(3점), B2,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적절성(3점), B3, 기관장의 재정 확보 노력(3점), B4, 회계의 투명성(4점) 설정
 - C,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20점 배점 6개지표 설정, C1, 시설장(직원)의 자격과 경력(3점), C2, 직원교육 및 훈련(3점), C3, 직원의 근속기간(3점), C4, 직원의 복지(3점), C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4점), C6, 직원의 업무숙련도)
 - D, 성과 영역은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지표와 경기도 지표의 혼합영역으로 하고 30점 배점, 5개 지표 제안, D1, 노인일자리 추진성과(10점), D2,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노력(5점), D3,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5점), D4, 수요처 만족도, D5, 참여자 만족도(5점)
 - E, 참여자의 권리 영역 17점을 배점하고 4개 지표 제안, E1, 참여자의 안전(4점), E2, 참여자의 고충처리(4점), E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5점), E4, 참여자에 대한 문화활동 제공(3점)
 - F, 지역사회 협력 영역은 13점을 배점하고 3개 지표 제안, F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5점), F2, 지역사회자원 활용(4점), F3, 지역사회 참여(4점)
- 제3차 ~제4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A, 시설 및 평가, B, 조직의 적절운영 및 재정, C, 인적자원관리, D성과 영역,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협력 등 각 영역에 대한 팀의 평가지표 발표와 평가지표개발위원회의 평가지표 수정 보완
- A,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

- B. 조직 운영 및 재정에서 실버인력뱅크의 조직을 기관장, 팀장, 사회복지사로 개념화
 - C. 인적자원관리는 시설장과 직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 D. 성과는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었음
 - E. 참여자의 권리는 참여자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논의됨
 - F. 지역사회 협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 여부 반영에 대해 의견 조정
- 제5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A~F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정범위 검토 및 전반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평가실시에 대한 결정은 추후 재논의
- 평가대상기관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로 하며 신규 시니어클럽은 1년이 경과한 기관만 대상으로 논의
 - 평가대상기간 : 6개월 또는 1년 실적에 대한 평가기간 논의가 있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1년 사업으로 1년을 평가기간으로 하며, 평가대상은 2019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정하고 행정적으로 추후 논의
 - 평가시기 : 2020년 5~6월 예정(단, 만족도 조사 등은 사업 종료 시점에서 조사 가능)
 - 평가주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 주기이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2년 주기로 운영,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관리가 2년 주기로 되어있음 이를 고려하여 자체평가 후 결정 필요
 - 평가방법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2020년은 자체평가로 실시하고 2020년 본 평가 실시
 - ✓ 평가대상 직원은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제외한 직원으로 함(전담인력은 사업량에 따라 배치되어 사업량이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음)
 - ✓ 평가실행기관은 경기도이나 직접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어 경기복지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Ⅲ-7〉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내용

일자	회의명	회의내용
2019.07.30	제1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평가의 목적 공유, 평가영역별 담당팀 구성,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논의
2019.08.06.	제2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6개의 평가영역설정, D.성과영역은 보건복지부지표와 경기도 지표를 통합 수요처와 참여자의 만족도 지표 배치
2019.08.19.	제3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A.시설 및 평가, B.조직운영 및 재정, E.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협력 영역의 팀 발표와 평가지표 수정 보완
2019.08.23.	제4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C. 인적자원관리, D성과 영역의 지표에 대한 팀 발표와 의견수렴
2019.09.06	제5차 평가지표개발위원회	A~F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정범위 검토 및 전반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후 5개 영역으로 조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안)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각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과정 실시
- 4차의 자문회의를 통한 학계·현장·공무원의 의견수렴
 - 일 시 : 2019.06.26.(1차자문회의), 07.09(2차 자문회의), 08.30(3차 자문회의), 09.06.(4차 자문회의) 09.27.(5차 자문회의)
 - 대 상 : 학계전문가,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연구진
 - 내 용 :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수행기관의 현황논의 및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평가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
 - 기간 2019.09.02.~ 09.07
 - 방 법 : 서면 의견 수렴
 - 내 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실효성과 적합성에 대한 의견수렴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의견수렴
 - 기 간 : 2019.09.11.~ 09.17

- 방 법 : 서면 의견 수렴
- 내 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현장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설명회
 - 일 시 : 2019.09.23.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내 용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수렴

4. 평가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 평가지표(안) 구성

-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가 포함됨
 - 5개 영역은 기관 운영, 인적자원관리, 성과, 참여자의 권리, 지역사회 협력으로 구성
 - 25개 지표 중 정량평가지표는 21개, 정성평가지표는 수요처·참여노인의 만족도, 기관장·직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4개의 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안)의 배점은 성과영역이 40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인적 자원관리 18점, 기관운영 16점, 참여자의 권리 15점, 지역사회 협력 11점으로 배치

〈표 Ⅲ-8〉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지표수(개)	영역별 비중 (%)
A. 기관 운영	1. 시설의 적절성	3	5	16
	2. 조직운영	3		
	3.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수립 및 실천	3		
	4. 기관의 재정확보 노력	3		
	5. 회계의 투명성	4		
B. 인적 자원관리	1.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	3	6	18
	2. 직원의 교육 및 훈련	3		
	3. 직원의 근속기간	3		
	4. 직원의 복지	3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지표수 (개)	영역별 비중 (%)
	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 (정성평가)	3		
	6. 직원의 업무 숙련도 (정성평가)	3		
C. 성과	1. 시장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8	7	40
	2.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8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과	4		
	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력	5		
	5.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력	5		
	6. 수요처 만족도 (정성평가)	5		
	7. 참여자 만족도 (정성평가)	5		
D. 참여자의 권리	1. 참여자의 안전	4	4	15
	2. 참여자의 고충처리	4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4		
	4.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3		
E. 지역사회 협력	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5	3	11
	2. 지역사회자원 활용	3		
	3. 지역사회 참여	3		
총계		100	25	100

□ 영역별 평가지표(안) 내용

- 5개 영역의 평가내용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적용한 내용으로 조정했으며 시장형 사업단의 실적과 같이 실버인력뱅크에 평가할 수 없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배점으로 함

〈표 Ⅲ-9〉 평가영역 별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A. 기관 운영	A1. 시설의 적절성	참여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A2. 조직운영	기관은 책임성 있게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가?
	A3.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수립·실천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되는가?
	A4. 기관의 재정확보 노력	기관장은 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A5. 회계의 투명성	기관의 회계관리가 투명한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B. 인적 자원 관리	1.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	기관장은 전문적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2. 직원의 교육 및 훈련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직원의 근속기간	직원의 평균근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4. 직원의 복지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 (정성평가)	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6. 직원의 업무 숙련도 (정성평가)	직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C. 성과	1. 시장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중 시장형 각 그룹 수는 어느 정도인가?
	2.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중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과	각 분야의 사업을 측정할 전체 사업량은 어느 정도인가?
	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5.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6. 수요처 만족도 (정성평가)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7. 참여자 만족도 (정성평가)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D. 참여자의 권리	1. 참여자의 안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가?
	2. 참여자의 고충처리	참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는 적절한가?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자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4.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참여자에 대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가?
E. 지역사회 협력	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가?
	2.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3. 지역사회 참여	기관장 또는 직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A. 기관 운영 영역

- 기관 운영으로 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영역을 공간활용, 기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문서화와 기관의 미션·비전의 수립 및 실천여부, 재정확보 노력과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영역
- 실버인력뱅크는 위탁사업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당초 사업이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2016년 경기도 지침에 따라 실버인력뱅크를 사업이 아닌 수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실버인력뱅크의 조직을 기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1명을 직원으로 봄
- 상담실, 교육실,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보고, 책임성의 측면에서 문서 등 관련 업무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 미션·비전이 직원 간 공유 및 실천되고 있는가, 기관의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노력여부 및 외부사업 공모 실적, 그리고 후원 실적 등
 - 실버인력뱅크의 미션·비전은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방향만 있으면 인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정도와 기관의 회계 투명성, 관련 구비서류 여부, 그리고 감사 실시 등을 평가

〈표 Ⅲ-10〉 A. 기관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목표
A. 기관 운영	A1. 시설의 적절성	참여자와 직원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A2. 조직운영	기관은 조직운영을 책임성 있게 하고 있다.
	A3.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수립·실천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천되고 있다.
	A4. 기관의 재정확보 노력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5. 회계의 투명성	기관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B. 인적 자원 관리 영역

- 인적 자원 관리는 6개 지표로 구성
- 기관장의 전문성 평가지표로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을 묻는 지표를 배치 정량평가의 한계를 정성평가로 보완

- 기관장의 정성평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숙지 정도, 기관의 현황, 발전 문제점,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노력 등 5가지 지표
-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은 정성평가로 실시하며, 처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내에서 배점 사항 의견이 있었으나 점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3점을 할당
- 직원의 전문성 평가지표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략지표와 정성지표 제안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평가를 위해 근속기간, 복지관련 평가지표 제안
- 직원의 업무 숙련도 부분도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안내 및 수행내용·과정의 숙지 여부, 활성화 방안 제시 가능여부, 그리고 안전상황 관련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 직원의 교육 및 훈련 지표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이 제외된 것은 법정 의무교육은 반드시 해야하는 교육으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됨
- 직원의 복지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간외수당, 대체휴가 등을 검토 후

〈표 Ⅲ-11〉 B. 영역의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목표
B. 인적 자원 관리	1.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	기관장은 기관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직원의 교육 및 훈련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직원의 근속기간	기관이 직원의 안정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직원의 근속기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는가를 평가한다.
	4. 직원의 복지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 (정성평가)	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 직원의 업무 숙련도 (정성평가)	직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C. 성과 영역

- 성과 영역은 7개 지표로 구성
- 성과영역의 배점은 40점으로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결과를 시장형일자리 8점, 공익활동 8점으로 하였으며 사업 성과평가 결과 뿐아니라 업무량을 고려하고자 각 사업의 참여노인 수의 합을 4점으로 배점
- 성과평가 관련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업평가결과를 활용함. 인력 파견사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치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노력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사업량이 경기도 평균 이상인지, 그리고 전년대비 확대 노력 여부 등을 보고자 함
- 수요처와 참여노인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질적향상 노력을 평가
 - 수요처 만족도와 참여자 만족도는 모두 정성평가로 진행예정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만족 정도를 수요처와 참여자로 나누어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표 Ⅲ-12〉 C. 성과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목표
C. 성과	1. 시장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결과(시장형일자리 성과평가)
	2.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결과(공익활동형 성과평가)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5.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 수요처 만족도 (정성평가)	수요처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7. 참여자 만족도 (정성평가)	참여자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 D. 참여자의 권리 영역

- 참여자의 권리 영역은 4개 지표로 구성
- 참여자의 안전, 고충처리, 개인정보 보호와 문화활동 제공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참여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이 3시간 이상 실천되고 있는지와 매뉴얼의 유무, 사고 발생 시 매뉴얼 적용여부, 안전 관련 장비 유무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참여자의 고충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관련 문서화 작업과 절차상 적절한 통로 유무, 그리고 제기된 고충과 관련하여 잘 처리되고 있는가
 -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서 유무와 관련 교육, 각종 보안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밀이 잘 보장되는가를 평가
 -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영역은 관련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여부와 참여 여부 등

〈표 Ⅲ-13〉 D. 참여자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목표
D. 참여자의 권리	1. 참여자의 안전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2. 참여자의 고충처리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4.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참여자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한다.

○ E. 지역사회 협력 영역

- 지역사회 협력 영역은 3개 지표로 구성
-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뱅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평가
-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평가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지표
 - 인적자원부터 MOU 체결, 그리고 지역 언론을 통한 기관 홍보 여부 등
 - 기관장이나 직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가능성도 넓히고자 함

〈표 Ⅲ-14〉 E. 지역사회 협력 영역 평가지표와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목표
E. 지역사회 협력	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협력·지원하고 있다.
	2.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참여	기관장(직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

IV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평가근거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활용방안
5.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IV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영역에서 평가는 대상에 따라 기관평가, 정책평가, 제도·사업평가, 실태조사로 분류되며⁸⁾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기관평가로 분류
 - 기관평가, 정책평가, 제도·사업평가,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관평가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사후평가이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있음
 - 정책평가는 정책의 결정, 집행, 결과 등 정책과정을 평가하며 평가범위가 넓고 평가에 포함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음
 - 제도·사업평가는 과정 및 사후평가로 제도나 사업의 목표달성도, 효율성 등을 측정하며 외부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표적으로는 장애인정책평가, 자활사업평가 등이 있음
 - 실태조사는 정책의 최종산출 평가이며 판단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며 전문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대표적으로 노인실태조사가 있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사후평가이며 기관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평가로 분류할 수 있음
 - 평가대상인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분류
 - 한편, 실버인력뱅크는 수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사업평가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나 2016년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침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8) 정흥원 외 (2013)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조작적 정의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소득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에 대한 진단 또는 평가는 미 실시
 -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 필요
 -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이 된 이후 조직운영, 사업성과,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 평가 미 실시
 -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 보조금 성과평가 미 실시
 - 실버인력뱅크의 공익활동의 성과가 2018년 현재 최대 1,330명, 최소 97명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운영기관 평가를 통한 원인 파악 필요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우수기관 격려와 컨설팅 필요기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수행기관의 실효성있는 지원 방향 모색

2. 평가근거

- 시니어클럽의 평가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2005년 이후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 실적·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안)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평가체계 도입 계획 제시

□ 실버인력뱅크의 평가근거

- 2016.12.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지침
 - 경기도 보건복지국 사회적 일자리과 지침으로 실버인력뱅크의 사업내용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추진으로 정하고 있음
 - 주요기능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사업 중심) 추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노인 사회활동 방향제시 및 참여 유도, 노인 취업상담 및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으로 규정
 - 실버인력뱅크의 운영방법으로 운영주체 기관과 예산의 독립성, 참여자의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일정 규모의 기준 시설 확보, 독립기관으로 운영 등이 제시되어있음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안)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평가체계 도입 계획 제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 필요

-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는 노인복지법과 2019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 근거하여 진행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3. 평가방법

□ 평가주체

-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는 경기도가 수행하며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5항, 사회복지시행령 제 25조의 4항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평가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가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 중
-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시니어클럽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경우, 경기도의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대한 조율이 필요
- 시니어클럽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와 경기도의 평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평가운영

- 평가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수행기관이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사무국은 현장평가위원 구성과 교육, 평가일정 조정, 자체평가지 개발 및 작성 교육, 평가 후 결과 분석 및 공표의 역할 수행
 - 2020년 자체 평가를 위해 사무국은 수행기관이 작성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지 개발 및 결과 분석, 이용자와 수요처의 만족도 평가 실시
 - 2020년 5월에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여 C.성과 영역 평가 실시
 - 2020년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2021년 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수정·보완 및 2021년 평가체계 구축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경기도 자체사업의 평가의 사무국을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 공무원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역할 부여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현장평가위원은 공무원 또는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 각 1인으로 팀을 구성
 - 사회복지시설평가나 경기도 자체사업 평가에서 성과(프로그램 영역)영역은 전문가 영역으로 분류되어 학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의 성과영역의 많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사무국에서 시행

- 현장평가위원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과 직원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일정 상 복수의 현장평가팀을 운영함에 따라 각 팀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피평가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필요

□ 평가주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1항에 근거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3년마다 평가 실시
 - 실버인력뱅크는 복지기관으로 정의할 경우 3년마다 실시 가능
 - 경기도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주기를 매년, 2년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인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년 주기로 평가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주기는 매년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 도입이후 약 5개월이 소요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시행했으나, 2017년 전면개편 주요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전환
 -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정은 평가지침 통지(1월 중, 재정부→각부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1월 ~3월), 확인·점검(3월 초~5월 말), 부처 평가점수 수정(3~6월 초, 재정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은 5단계로 구성

〈표 IV-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등급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당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성시경(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의 부담감, 중복평가, 개별사업의 실질적 성과 측정의 한계 등으로 전면개편⁹⁾

9) 기획재정부(2017.09.28.)보도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평가기준을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사업을 평가,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외부에 공개
 -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 : 전문가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 평가
 - 평가제도와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주기는 2021년 본 평가 시행 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고려하여 영역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달리 시행 가능
- 기본 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는 C.성과영역은 자료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 시설환경과 지역사회활동 등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평가하여 변화 평가

□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운영 보조금지원 대상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평가대상으로 함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기관 운영, 조직, 성과, 참여자 권리, 지역사회활동 등이 평가대상임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사업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조직의 평가대상은 기관장과 직원으로 하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제외함
 - 실버인력뱅크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기초지자체, 자원봉사회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나 경기도 운영지침(2016.12.)등에서 유사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이 아닌 기관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팀장,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기관으로 조직적 정의 후 평가
- 2020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자체평가로 실시되며 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2월임
- 향후 본 평가기간의 주기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변동될 것으로 보임

4.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과 활용 사례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인력의 충분한 훈련, 평가팀간의 격차 해소, 평가기관의 전문성 등이 요구됨
-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평가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컨설팅 등이 행해짐
 -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단이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근거 시설위탁 시 시설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를 근거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 중앙정부는 정책평가의 결과로 예산 증액, 담당공무원 승진 및 연수기회 제공, 표창 수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음

〈표 IV-2〉 평가결과 활용의 예

평가결과 활용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C 성과평가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제16조 조직·예산관리 등에 반영 - 제17조 승진 및 진급 심사에 반영 - 제18조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 - 제19조 모범·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반영 - 제20조 보직·직위공모 등에 반영 - 제21조 표창 수여·포상금 지급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 실시 -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 유예 가능

법제처 : *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시행 2019. 9. 18.] [방위사업청훈령 제539호, 2019. 9. 18., 일부개정]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3. 13.] [경기도조례 제6092호, 2019. 3. 13., 제정]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결과 활용 방안

- 공익활동 성과관리 결과 성과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 지원¹⁰⁾
 - 성과결과 우수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실시
 - 성과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교육 등) 지원
 - 성과결과 부진기관(하위5%)을 선정, 사업운영 컨설팅 또는 맞춤교육 지원
 - 부진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향후개선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 2년 연속 부진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결과를 공동 브랜드 개발, 판로 및 물류지원, 성장지원 센터 컨설팅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¹¹⁾
 - 시장형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 사업단 선정 및 포상 등 각종 사업단 평가 자료로 활용
 - 성과진단 결과에 따라 2년 연속 V그룹에 속하는 부진 사업단은 2019년 사업 심사 시 반려 조치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결과 활용방안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결과는 1차적으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으며, 2차적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수행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음
- 따라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와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지원 제공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공·포상(금)제공, 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다음 평가까지),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우선 지급 등을 검토
 -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우수기관의 직원은 컨설턴트로 활동

10)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계획(안)

11) 보건복지부(2019). 2018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계획

- 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단 결과 활용 방안을 참고하여 사업량 조정 또는 사업참여 심사 시 고려
- 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화, 직원의 안정된 고용유지와 지자체의 협력 유도 등에 활용
 - 사회복지기관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실버인력뱅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상근 비율,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은 다른 사회복지기관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
 - 실버인력뱅크는 기관이 아닌 위탁사업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 노인자원 봉사에서 시작하여 2016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환되었으나 2006년과 동일한 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 중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행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수행기관의 조직력 강화, 보조금(인건비·사업비)의 현실화 등 운영체계 변화 필요
 - 경기도에서는 수행기관의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를 위해 시니어클럽 확충과 실버인력뱅크의 전환을 추진의 자료로 활용

5.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컨설팅
 - 평가실시의 목적이 수행기관의 역량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평가실시에 앞서 충분한 사전 교육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기관평가를 처음 받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가의 목적과 취지, 방법, 결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장 마련
 - 평가 시 필요한 서류 작성, 근거자료 첨부에 대한 사전 설명
 - 또한 수행기관의 조직운영과 체계적 관리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교육 지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전·미션 수립, 사업계획 등 조직운영의 기반 마련에 어려움 예상

- 희망기관에게 조직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

- 수행기관 평가 이후에 평가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개선이 요구되는 수행기관은 의무적 컨설팅 실시, 희망기관은 선택적 컨설팅 지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인력풀 마련

- 시행 20년이 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위원의 인력풀이 있음에도 평가단에 대한 불만과 평가단 간 역량 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다수의 피평가기관을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해야 하므로 복수의 평가단을 운영하며 사전에 평가단의 역량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목적, 조직구성과 인력, 사업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교육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복지증진과 일정 소득 창출에 목적이 있어서 기관의 목적과 주요 사업에 차이가 있음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필요

□ 수행기관 평가 관련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시기, 평가주기, 평가대상, 평가수행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재원 등이 기술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
 - 평가시기 : 자체평가와 동일한 매년 5~6월로 예정하고 자체평가 이후 확정
 - 평가주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하되 성과영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평가대상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 평가수행기관 : 경기도가 주체이나 평가전문기관에 대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시행 중
- 평가위원회 구성 : 2인 1조 구성 또는 3인 1조 구성
 -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위원회 구성은 학계 전문가1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등 3인 1조로 구성
 -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규모와 평가영역이 적은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영역 평가 중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는 평가수행기관에서 분석하는 항목으로 평가위원회를 2인 1조로 구성 가능
- 평가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 대행사업 등으로 마련

참고문헌

- 김정희(2018) 2018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 성시경(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정홍원 외 (2013)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시행 2019. 9. 18.] [방위사업청훈령 제539호, 2019. 9. 18., 일부개정]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 3. 13.] [경기도조례 제6092호, 2019. 3. 13., 제정]
- 기획재정부(2017.09.28.)보도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계획(안)
2018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계획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부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2020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

A. 기관운영

평가지표	A1. 시설의 적절성	
평가목표	참여자와 직원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참여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해당 여부
	① 상담실 또는 교육실이 구비되어 있다.	
	② 시설의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③ 노인의 기관 이용 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배점기준	④ 내부 또는 외부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A1-① 상담실 또는 교육실 설치 여부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현장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사무공간과 구분되는 상담실 또는 교육실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A1-② 시설의 내·외부 청결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현장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시설 내·외부가 청결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A1-③ 노인의 기관 이용 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현장 확인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계단 난간손잡이 및 계단 미끄럼 방지 장치 또는 엘리베이터 여부 <input type="checkbox"/> A1-④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현장 확인 <input type="radio"/> 필수포함사항 :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참여자와 직원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	
참고		

평가지표	A2. 조직운영	
평가목표	기관은 조직운영을 책임성 있게 하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은 책임성 있게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기관의 운영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개정사항(개정 연월일)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② 기관의 연혁,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이 문서화되어 있다.	
	③ 기관의 비품관리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A2-① 기관의 운영규정의 문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운영규정 ○ 인정범위 : 법인과 기관운영규정에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내용을 추가 또는 하려는 노력이 문서화되어 있으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A2-② 기관의 설치 및 연혁, 재산 등이 기록·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 인정범위 : 기관의 연혁,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이 모두 기록되어 보관하고 있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A2-③ 기관의 비품관리대장이 기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비품관리대장, 폐기비품관리대장 ○ 인정범위 : 기관의 비품관리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경우 	
참고		

평가지표	A3. 기관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수립·실천	
평가목표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천되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고 실천되는가?	해당여부
	①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다.	
	②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직원 간에 공유되고 있다.	
	③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이 실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A3-①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의 문서화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 인정범위 : -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문서화되어 있어야함 - 실버인력뱅크는 미션·비전(사업방향)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방향이 문서화되어 있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A3-②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의 공유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워크숍, 직원교육 실시 관련 자료 및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 모든 직원은 교육,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미션·비전(사업방향)에 대해 공유함 - 기관 내 공동의 장소(게시판, 벽 등)에 게시되어 있으면 공유 인정 <input type="checkbox"/> A3-③ 기관의 미션·비전(사업방향)의 실천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단위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사업계획,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참고		

평가지표	A4. 기관의 재정확보 노력	
평가목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장은 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가?	해당여부
	① 외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실적이 있다.	
	②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적이 있다.	
	③ 후원금(품)을 수령한 실적이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A4-① 보조금을 제외한 외부 공모사업 신청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외부 공모사업 신청 공문 등 외부 공모사업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은 제외 -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인정 - 차량지원사업 등 현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선정결과도 인정 - 법인의 외부 공모사업으로 기관에 지원하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A4-② 보조금을 제외한 외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외부 공모사업 선정 공문 등 외부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은 제외 -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등에서 진행하는 사업 공모 사업 인정 - 운영법인에서 지원하는 후원금(품) 및 사업비 지원은 제외 - 차량지원사업등 현물지원하는 공모사업 선정결과도 인정 - 법인의 외부 공모사업으로 기관에 지원하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A4-③ 후원금(품)을 수령한 실적 유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후원금영수증, 세출결산서 내 후원금(품) 내역이 있으면 인정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법인에서 지원하는 후원금(품) 및 사업비 지원 제외(실버인력뱅크는 인정)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업에 반영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참고		

평가지표	A5.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기관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의 회계관리가 투명한가?	해당여부
	① 회계 부조리 관련 행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 도움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③ 회계 관련 구비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④ 수입 및 지출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⑤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A5-① 행정 조치(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의 경고 이상의 기관 경고 조치) 사항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7년~2019년(최근 3년) ※ 위탁법인이 변경된 경우는 위탁법인이 변경된 날로부터 평가 실시 ○ 평가자료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회계 부조리 관련 지적 유무 확인 공문 <p><input type="checkbox"/> A5-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 도움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 도움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A5-③ 회계 관련 구비서류 존재 여부와 내용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회계 관련 구비서류 ○ 인정범위 : 회계 관련 구비서류(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정 	

	<p>※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p> <p>□ A5-④ 수입 및 지출 원칙과 방법 준수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원과 지출원이 임면되어 있으며, 보조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 <p>□ A5-⑤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재무회계규칙 제42조(감사)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지도점검은 미인정
참고	

B.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B1. 기관장의 자격과 경력	
평가목표	기관장은 기관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장은 전문적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상근 경력이 3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p>※시니어클럽은 기관장, 실버인력뱅크는 팀장이 대상임</p> <p><input type="checkbox"/> B1-① 기관장(팀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인정범위 : 기관장(직원)은 평가일 현재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B1-② 기관장(팀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관련기관(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근무기간도 인정 <p><input type="checkbox"/> B1-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상근 경력 3년 이상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법인 변경 시 변경 이후 시점부터 상근이면 인정 	
참고		

평가지표	B2. 직원 교육 및 훈련	
평가목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외부 교육과 훈련 시간이 1인당 15시간 이상이다.	
	② 외부 교육과 훈련 시간이 1인당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다.	
	③ 외부 교육과 훈련 시간이 1인당 10시간 미만이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1번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2번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3번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p>□ B2 직원의 외부 교육과 훈련 시간 확인</p> <p>○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p> <p>○ 평가자료 : 교육결과보고서, 출장명령서, 교육교재, 내부기안 등</p> <p>○ 산 식 : 1인당 교육시간 = $\frac{\text{직원의 총 교육시간의 합}}{\text{직원수}}$</p> <p>○ 인정범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기관 내에서 외부강사 초청에 의한 교육 인정</p> <p>- 법정 의무교육은 제외</p> <p>- 전담인력을 제외한 직원</p>	
참고		

평가지표	B3. 직원의 근속기간	
평가목표	기관이 직원의 안정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직원의 근속기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는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평균근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① 평균근속기간이 24개월 이상이다.	
	② 평균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다.	
	③ 평균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이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1번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 보통(2점) : 2번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3번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p>□ B3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직원 근속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7년~2019년(최근 3년) ○ 평가자료 : 인사기록카드 <p>○ 산 식 : $\text{평균근무기간} = \frac{\text{직원의 총 근무기간의 합}}{\text{직원수}}$</p> <p>○ 인정범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은 시·군의 지침에 따른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수 - 실버인력뱅크는 2명으로 함 (단, 전담인력은 제외) - 개소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우수로 인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에 통합·변경·흡수된 경우 경력을 상호 인정함 	
참고		

평가지표	B4. 직원의 복지	
평가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여부
	①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⑥ 직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⑦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6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 보통(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B4-①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당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p><input type="checkbox"/> B4-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고 있다면 인정 <p><input type="checkbox"/> B4-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휴가 관련 근거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B4-④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실시하는 제도로서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내 포상도 인정 □ B4-⑤ 시간외수당 지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지급 내용 등 ○ 인정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지급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시간외수당을 대체휴가로 지급한 경우 인정 □ B4-⑥ 직원 상해보험에 가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B4-⑦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규정 및 시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관련 서류, 교육관련 서류, 직원면담, 직원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고충처리 규정이 있으며 시행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p>참고</p>	

평가지표	B5. 기관장의 운영 전문성		
평가목표	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장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Y	N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② 기관 운영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 내용과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		
	④ 기관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5-①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중 참여자 기준, 활동기간, 활동비, 사업유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 B5-② - 기관 운영규정(설치기준, 자격기준, 인원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단, 실버인력뱅크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의 운영규정으로 대체함 □ B5-③ - 현재 기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내용, 진행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B5-④ - 기관 운영의 문제점, 운영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B5-⑤ -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을 인터뷰 내용과 함께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		
참고			

평가지표	B6 직원의 업무 숙련도		
평가목표	직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Y	N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를 숙지하고 있다.		
	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내용과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B6-①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중 참여자 기준, 활동기간, 활동비, 사업유형 등 숙지하고 있는가 확인 <input type="checkbox"/> B6-② - 현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수요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 <input type="checkbox"/> B6-③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 <input type="checkbox"/> B6-④ -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운영지침에 맞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를 파악		
참고			

C. 성과

평가지표	C1. 시장형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	
평가목표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결과	
평가내용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중 시장형 각 그룹 수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 노인일자리(시장형) 각 그룹 수량	
배점기준	· 우수(8점) : 평균 8점 이상	점 수
	· 양호(6점) : 평균 6점~7점 · 보통(4점) : 평균 4점~5점 · 미흡(2점) : 평균 3점 이하	
평가방법	<p>□ C1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의 성과 중 시장형 사업 성과결과 각 그룹 수량</p> <p>○ 평가자료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p> <p>운영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 평가가 I그룹인 경우 10점 운영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 평가가 II그룹인 경우 8점 운영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 평가가 III그룹인 경우 6점 운영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 평가가 IV그룹인 경우 4점 운영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 평가가 V그룹인 경우 2점</p> <p>산정식 = $\frac{\Sigma \text{배 점} * \text{해당등급사업단수}}{\text{전체사업단수}}$</p> <p>○ 인정범위 : 시장형을 하지 않는 기관은 비배점으로 함</p> <p>※ 사회서비스형은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 추이를 확인한 후 반영 예정</p>	
참고		

평가지표	C2.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추진 성과	
평가목표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결과	
평가내용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성과 중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해당여부
	○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점수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8점) : 공익활동 90점 이상 · 양호 (6점) : 공익활동 80~89점 · 보통 (4점) : 공익활동 70~79점 · 미흡 (2점) : 공익활동 69점 이하 	점 수
평가방법	<p>□ C2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의 성과 중 공익활동형 사업의 평가점수로 함</p> <p>○ 평가자료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p> <p>인정범위 :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은 비배점으로 함</p>	
참고		

평가지표	C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과	
평가목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내용	각 분야의 사업을 측정할 전체 사업량은 어느 정도인가? ○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 수,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인력파견형 참여노인 수의 합이 경기도 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의 참여노인 수 합에 대한 상대평가	해당여부
배점기준	· 우수 (4점) : 사업량 전체 상위 15% 이상 · 양호 (3점) : 사업량 전체 상위 50%이상~15%미만 · 보통 (2점) : 사업량 전체 상위 80%이상~50%미만 · 미흡 (1점) : 사업량 전체 상위 80%	점수
평가방법	□ C3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의 성과 중 참여노인수의 합을 평가함 ○ 평가자료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결과 ○ 산정식 = $\Sigma(\text{시장형 참여노인수} + \text{공익활동 참여노인수} + \text{인력파견형 참여노인수})$ ○ 인정범위 : 인력파견형은 실제 파견한 인원 수	
참고		

평가지표	C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력		
평가목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평가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해당여부	
	① 전년대비 사업량이 확대되었다.		
	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③ 전년대비 사업단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평가내용	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신규사업을 1개 이상 추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5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2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C4-① 전년대비 사업량의 확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량 ○ 인정범위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중 2개 이상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확대되었을 경우 인정 <p><input type="checkbox"/> C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유형 ○ 인정범위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중 3개 이상 <p><input type="checkbox"/> C4-③ 전년대비 사업단 확장 노력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전년 대비 당해년도 사업계획 반영) ○ 인정범위 : 전년 대비 제조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수요처 발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4-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 추진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의 신규 사업 포함
참고	

평가지표	C5.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력	
평가목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경기도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하였다.	
	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 관련 공동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협력을 하고 있다.	
	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사 등을 1회 이상 하였다.	
	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연간 5회 이상 하였다.	
배점기준	· 우수(5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2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C5-① 경기도 등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1회 이상 신청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컨설팅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신청 공문 등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경기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C5-② 사업단(전체) 자체평가 실시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평가회 관련 서류 1건 이상 <input type="checkbox"/> C5-③ 사업단(1개 이상) 공동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협력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협회, 지자체 등 □ C5-④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조사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출장명령서 및 복명서 ○ 인정범위 :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석, 기업 및 시장 방문, 우수기관 견학 등 □ C5-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 5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관련 사진, 홍보물,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뉴스레터, 경기복지플랫폼, 기관 홈페이지, SNS 등
<p>참고</p>	

평가지표	C6. 수요처 만족도					
평가목표	수요처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평가내용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만족하십니까?					
	② 참여자의 자질 및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③ 참여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④ 참여자의 업무 숙련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⑤ 참여자의 활동이 도움이 되십니까?					
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배점기준	· 우수(5점) : 130점 이상이다. · 양호(4점) : 100점 ~ 130점 미만이다. · 보통(3점) : 70점 ~ 100점 미만이다. · 미흡(2점) : 70점 미만이다.					점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점수 계산 방법 - 수요처 중 전화 면접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무작위로 5명에 대해 전화로 질문 - 1인의 각 항목 점수는 5점이며 각 항목은 조사대상자 5명의 점수를 합산한 150점 만점 <input type="checkbox"/> 질문방법 - 수요처 중 전화 면접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무작위로 2명에 대해 전화로 질문한다.					

	<p>질문① 수요처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질문한다.</p> <p>질문② 수요처에서 근무하는 참여자의 자질 및 태도를 말한다.</p> <p>질문③ 수요처에서 근무하는 참여자의 근무시간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질문한다.</p> <p>질문④ 수요처에서 근무하는 참여자의 근무 숙련도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질문한다.</p> <p>질문⑤ 수요처에서 근무하는 참여자가 수요처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한다.</p> <p>질문⑥ 수요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하여 질문한다.</p>
참고	

평가지표	C7. 참여자 만족도					
평가목표	참여자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평가내용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만족하십니까?					
	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동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 직원의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⑤ 수요처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배점기준	· 우수(5점) : 130점 이상이다. · 양호(4점) : 100점 ~ 130점 미만이다. · 보통(3점) : 70점 ~ 100점 미만이다. · 미흡(2점) : 70점 미만이다.					점 수
평가방법	□ 점수 계산 방법 - 수요처 중 전화 면접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무작위로 5명에 대해 전화로 질문 - 1인의 각 항목 점수는 5점이며 각 항목은 조사대상자 5명의 점수를 합산한 150점 만점					

	<p>□ 질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중 전화 면접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무작위로 5명에 대해 전화로 질문 - 질문 전에 참여사업에 대해 질문 <p>질문① 참여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질문 질문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동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 질문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해 질문 질문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담당직원 태도 적절한가에 대하여 질문 질문⑤ 수요처와 참여자간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 질문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계속적으로 지원 할지에 대하여 질문</p>
참고	

D. 참여자의 권리

평가지표	D1. 참여자의 안전	
평가목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 여부
	① 활동안전 관련 보험(공익활동, 도급계약 참여자: 상해보험, 근로계약 참여자: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②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안전관리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고 사고발생 시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있다.	
	④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⑤ 야외활동 참여자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 활동시간을 조정하거나 활동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한다.	
배점기준	· 우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D1-① 참여자의 보험(상해보험 혹은 산재보험) 가입 서류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보험(상해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류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공익활동 및 도급계약 참여자 활동 전 상해보험, 근로계약 참여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input type="checkbox"/> D1-②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안전교육 실시 계획서,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참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했다는 진행일지 확인 시 인정 - 보건복지부 안전교육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D1-③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과 활용 여부 확인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안전사고 발생 조치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고, 사고발생시 조치 및 보고가 매뉴얼대로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인정 □ D1-④ 안전한 근무환경 및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안전에 관련한 소모품 및 장비 등 구입 문서 ○ 인정범위 : 야외활동사업단 안전도구(조끼, 마스크 등) 구입 및 지급 여부 확인되면 인정 □ D1-⑤ 야외활동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 활동시간을 조정하거나 활동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하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참여자 일지 확인, 혹서기 및 혹한기 대비 활동 조정 관련 내부서류 ○ 인정범위 : 혹서기 및 혹한기에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활동시간과 활동장소를 조정하여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p>	

평가지표	D2. 참여자의 고충처리	
평가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평가내용	참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는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참여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	
	② 참여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참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참여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배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p><input type="checkbox"/> D2-① 참여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참여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을 확인하여 인정 <p><input type="checkbox"/> D2-② 참여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참여자 고충처리대장 또는 상담일지, 참여자 활동일지 등 고충이 기록된 문서 ○ 인정범위 : 참여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p><input type="checkbox"/> D2-③ 참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의 문서화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간담회 및 회의록, 참여자고충처리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범위 : 참여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D2-④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 D2-⑤ 참여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참여자가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공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아도 관련 근거가 있으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고충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
참고	

평가지표	D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목표	참여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참여자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해당 여부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④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p>□ D3-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수집, 보호, 활용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p>□ D3-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안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정보보시스템의 권한, PB 비밀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이 있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B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3-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D3-④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면 인정 □ D3-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 시 인정
참고	

평가지표	D4. 참여자에게 문화활동 제공	
평가목표	참여자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한다.	
평가내용	참여자에 대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가?	해당여부
	① 문화활동을 사업계획에 수립하고 있다.	
	② 문화활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참여자가 문화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였다.	
	④ 문화활동 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p>□ D4-① 문화활동의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연간사업계획서에 참여자 문화활동 계획 및 예산 수립 여부 확인 ○ 인정범위 : 전체 사업단 대상 연간사업계획서에 참여자 문화활동 계획 및 예산이 포함되어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 <p>□ D4-② 문화활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 결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참여자를 위한 문화활동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지출서류 확인 ○ 인정범위 : 문화활동 실행계획서와 실시 후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인정 <p>□ D4-③ 참여자의 문화활동 참여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문화활동 결과보고서, 문화활동 참가자 명단 ○ 인정범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문화활동에 참여한 기록(결과보고, 명단)이 있으면 인정 <p>□ D4-④ 문화활동 운영 시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문화활동 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여행자보험(지출서류)등 ○ 인정범위 : 문화활동 운영 시 참여자 여행자보험가입, 응급약품 준비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하였으면 인정 	
참고		

E. 지역사회협력

평가지표	E1.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평가목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협력·지원하고 있다.	
평가내용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가?	해당여부
	① 지자체 주도의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를 주체하고 참여한 적이 있다.	
	② 지자체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나 교육 등을 위하여 장소 또는 버스를 요청한 적이 있다.	
	③ 노노케어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중복에 관한 지자체의 협조를 받은 적이 있다.	
	④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⑤ 지자체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수행기관 관리에 노력하였다.	
배점기준	· 우수(5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호(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2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E1-① 지자체 주도의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주체 및 참여여부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간담회 주체 공문 및 회의록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지자체 관할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행하였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E1-②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나 교육 등을 위하여 장소 또는 버스 제공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대관 또는 버스대여 협조 요청 공문, 진행(일지 등)근거자료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지자체 지원의 무료 대관을 통한 참여자 교육 및 회의 시 인정 - 지자체 지원의 무료 버스 대여 협조를 통해 참여자 이동수단으로 사용 되었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E1-③ 노노케어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중복 확인에 관한 지자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노노케어 수혜자 자격정보조회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 인정범위 : 노노케어 수혜자 자격정보조회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1회 이상 근거 인정 □ E1-④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원을 통한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수행기관 예산집행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지자체 추경예산 확정 공문 및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지자체 추경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용내역 상세하면 인정 □ E1-⑤ 지자체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수행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자료 :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 및 점검 결과 공지 공문 ○ 인정범위 : 지자체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결과 공지 공문이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평가지표	E2. 지역사회자원 활용	
평가목적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내용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실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시설 등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③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④ 지역 언론을 통해 사업운영 또는 기관홍보를 추진하였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E2-①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사업운영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자료 : 인적자원(프로그램진행자, 무료강사 등) 활용을 위한 요청 공문 및 진행일지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무료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보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E2-②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시설 등과 MOU를 체결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협약서 및 협력활동 근거자료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MOU 체결 기관과의 협력활동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E2-③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 및 수요처에 제공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후원금(품) 인수증, 활용내역 또는 활용근거자료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후원금(품) 인수증, 활용내역 또는 활용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input type="checkbox"/> E2-④ 지역 언론을 통한 사업운영 또는 기관홍보 <input type="radio"/>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input type="radio"/> 평가방법 : 언론보도자료 및 보도스크랩 <input type="radio"/> 인정범위 : 언론 게재 자료가 있으면 인정	
참고		

평가지표	E3. 지역사회 참여	
평가목적	기관장(직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	
평가내용	기관장 또는 직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기관장은 지역사회 활동에 연 10회 이상 참여하였다.	
	② 기관장(직원)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 등에 5회 이상 참여하였다.	
	③ 기관장(직원)이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부터 상훈을 받은 실적이 있다.	
배점기준	· 우수(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 보통(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평가방법	<p>※ 시니어클럽은 기관장, 실버인력뱅크는 팀장이 대상임</p> <p><input type="checkbox"/> E3-① 기관장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방법 : 기관장의 출장명령서 및 관련 공문, 활동확인서, 외근부 등 ○ 인정범위 : 지역사회활동 관련 출장명령서 10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출강, 법인활동, 비공식 조직 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회의 등은 제외 <p><input type="checkbox"/> E3-② 기관장(직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 등에 참여 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방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 등에 대한 출장복명서 또는 관련 공문, 활동확인서, 외근부 등 ○ 인정범위 : 기관장(직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회의 등 5회 이상 참여 근거 자료 <p><input type="checkbox"/> E3-③ 기관장(직원)이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부터 상훈을 받은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 평가일 기준 3년 ○ 평가방법 : 상훈, 표창장 사본, 포상 받은 증거자료 ○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관련기관에서 상훈, 표창, 포상, 지자체 표창 등의 실적 	
참고		